

|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 |
|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|
| 의안번호      | 제 호                | 의결사항 |
| 의결<br>연월일 | 2026. . .<br>(제 회) |      |

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 
일부개정령안

|        |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 출 자  | 국무위원 윤호중<br>(행정안전부장관) |
| 제출 연월일 | 2026. . .             |

법제처 심사 전

## 1. 의결주문

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## 2.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·집행체계 개선을 위하여 기획예산처에 국고보조금관리단 및 2개 담당관을 각각 평가대상 조직으로 신설하면서 이에 필요한 인력 23명(고위공무원단 1명, 3급 또는 4급 1명, 4급 1명, 5급 12명, 6급 8명)을 증원하되, 증원되는 인력 3명(5급 3명)은 각각 행정안전부, 보건복지부 및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충원하고, 기획예산처장관에 대한 정책보좌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장관정책보좌관 1명(별정직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1명)을 증원하려는 것임.

## 3. 주요토의과제

없음

## 4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2026년도 기정예산에서 대체함

다. 합 의 : 기획예산처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    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 및 신·구정원대비표, 별첨  
2) 입법예고(2026. 0. 00. ~ 0. 00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  
음

## 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개정령안

기획예산처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제2항 중 “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”을 “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”으로 하고, “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”을 “기획조정실장,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.

-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,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

제7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제7조의2(국고보조금관리단장) ①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

- ② 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.

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금통합관리망(이하 “보조금통합관리망”이라 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·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·법령·제도의 수립·조정

2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·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마련
3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·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·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·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
4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
5.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 체계 운영
6.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·관리 및 활용 촉진
7.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

제12조제3항제1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.

12.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·법령·제도의 수립·조정

제17조제2항 후단 중 “50명”을 “52명”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행정안전부, 1명(5급 1명)은 보건복지부, 1명(5급 1명)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별표 1 중 총계 “436”을 “460”으로 하고, 별정직 계 “3”을 “4”로 하며, 고위공무원단 1 다음에 “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 3”을 신설하고, “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 2”를 삭제하며, 일반직 계 “431”을 “454”로 하고, 고

위공무원단 “16”을 “17”로 하며, 3급 또는 4급 이하 “413”을 “435”로 한다.

별표 3에 제6호 및 제7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|                    |     |
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6. 국고보조금관리단        | 1명  |
| 7. 국고보조금관리단 2개 담당관 | 22명 |

## 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 · 구조문대비표

| 현<br>행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개<br>정<br>안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제4조(하부조직) ① (생략)<br>② 장관 밑에 <u>대변인 및 장관정책보좌관 각 1명을 두고, 차관 밑에 기획조정실장 및 감사담당관 각 1명을 둔다.</u>                   | 제4조(하부조직) ① (현행과 같음)<br>② ----- <u>대변인 1명 및 장관정책보좌관 2명</u> -----<br>---- <u>기획조정실장, 국고보조금관리단장 및 감사담당관</u> ----.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 제6조(장관정책보좌관) ① 장관정책보좌관은 <u>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 | 제6조(장관정책보좌관) ① 장관정책보좌관 중 1명은 <u>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별정직공무원으로, 1명은 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별정직공무원으로 보한다. 다만,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 또는 4급 이상 일반직공무원으로 대체할 수 있다.</u>   |
| ② (생략)<br><u>&lt;신 설&gt;</u>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② (현행과 같음)<br>제7조의2(국고보조금관리단장) ① <u>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공무원으로 보한다.</u><br>② <u>국고보조금관리단장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 차관을 보좌한다.</u><br>1. 「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26조의2제1항에 따른 보조 |

금통합관리망(이하 “보조금통합관리망”이라 한다)의 운영과 관련된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및 관리·집행체계 개선을 위한 정책·법령·제도의 수립·조정

2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·분야별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 체계 마련

3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운영과 관련된 부처별·분야별 국고보조금 관리·집행체계의 이행 여부 확인·점검 및 그 결과의 활용

4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

5.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의심사업 현장점검 체계 운영

6. 국고보조금 또는 국고보조사업에 관한 인터넷 기반의 대국민 포털 구축·관리 및 활용 촉진

7. 그 밖에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에 관한 사항

제12조(재정성과국) ①·② (생

제12조(재정성과국) ①·② (현행

략)

③ 국장은 다음 사항을 분장한다.

1. ~ 11. (생략)

12. 보조금통합관리망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

13. ~ 28. (생략)

제17조(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생략)

② 기획예산처에 두는 정원의 직급별 정원은 총리령으로 정한다. 이 경우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은 50명을, 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은 4급 공무원의 정원(3급 또는 4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각각 그 상한으로 하고, 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은 5급 공무원의 정원(4급 또는 5급 공무원 정원을 포함한다)의 3분의 1을 그 상한으로 한다.

<신설>

과 같음)

③ -----  
--.

1. ~ 11. (현행과 같음)

12. 보조금관리위원회의 운영 및 국고보조사업 관련 정책·법령·제도의 수립·조정

13. ~ 28. (현행과 같음)

제17조(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) ① (현행과 같음)

② -----  
-----  
--. -----  
-----  
----- 52명 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  
-----.

③ 기획예산처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 중 1명(5급 1명)은 행정안전부, 1명(5급 1명)은 보건복지

부, 1명(5급 1명)은 국세청 소속 공무원으로 각각 충원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기획예산처장관은 충원 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하여 해당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.

## 신 · 구 정원 대비 표

[별표 1]

기획예산처 공무원 정원표(제17조제1항 관련)

| 직 급 별                    | 현 행                | 개정안                | 증 감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|-----|
| 총 계                      | <u>436</u>         | <u>460</u>         | +24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   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    |
| 별정직 계                    | <u>3</u>           | <u>4</u>           | +1  |
|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   | 1     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  |     |
| <u>3급 상당 또는 4급 상당 이하</u> | <u>&lt;신 설&gt;</u> | <u>3</u>           | +3  |
| <u>3급 또는 4급 상당 이하</u>    | <u>2</u>           | <u>&lt;삭 제&gt;</u> | -2  |
| 일반직 계                    | <u>431</u>         | <u>454</u>         | +23 |
| 고위공무원단                   | <u>16</u>          | <u>17</u>          | +1  |
| 3급 또는 4급 이하              | <u>413</u>         | <u>435</u>         | +22 |
| ·      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·                  |     |

< 의안 소관 부서명 >

|             |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행정안전부 조직기획과 |                  |
| 연 락 처       | (044) 205 - 2317 |